

2018년 제10회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사실관계

1. Plato국과 Depaul국은 서로 인접한 국가이다. Plato국은 기독교를 믿는 Paran족과 이슬람교를 믿는 Daram족이 각각 인구의 90퍼센트와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인접한 Depaul국은 이와 달리 Paran족과 Daram족이 각각 인구의 10퍼센트와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각 부족은 양국 내에서는 지리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2. Plato국 내에 거주하는 Daram족은 다수파인 Paran족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으며, 그 영향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 및 단체들이 다수 출현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Plato국의 형법은 “국가의 특정한 영역을 분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반역죄로 최하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고 있다.
3. Vincent의 부모는 원래 Plato국의 출신으로 1970년대에 Depaul국으로 이주하였으며, Vincent는 1990년경에 Depaul국에서 태어나 2, 3 차례 Plato국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Depaul국에서 거주하였다. Vincent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Plato국의 법률에 따라 Plato국의 국적을 보유한 부모의 영향으로 Plato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Depaul국의 법에 따라 Depaul국의 국적도 보유하는 이중국적자이다.
4. Plato국의 법률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의 보유를 허용한다. Vincent는 Plato국의 법무부에 이와 같은 서약을 제출하여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5. Vincent는 Plato국의 Daram족 출신인 부모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Plato국 Daram족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Depaul국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Plato국의 Daram족이 왜 독립해야하는가에 관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였다. 그는 인터뷰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Plato국에서 폭탄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 Vincent는 2014년 1월경 Plato국을 방문하였다가 귀국을 위하여 출국절차를 마치고, Depaul국의 국적기에 탑승하였다. 비행기는 모든 승객의 탑승을 마치고 활주로로 이동하여 이륙하기 직전, 관제탑의 명령으로 다시 탑승동으로 돌아왔으며, Vincent는 Plato국의 경찰에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7. Plato국의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의 요지, 죄명,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하나 Vincent를 체포할 당시 수사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연행에 저항하는 Vincent를 비행기에서 강제로 연행하였다.
8. Plato국의 수사기관은 Vincent를 체포한 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Plato국과 Depaul

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Plato국의 수사기관은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Vincent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에 비추어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Depaul국에 대한 영사통보 없이 수사를 계속하였다.

9. Vincent는 Plato국에서 활동하는 Daram족의 무장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관공서에 대한 무장공격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Vincent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Plato국의 수사기관은 3일 동안 그를 잠을 재우지 않고, Plato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친척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나아가 Plato국은 테러혐의자들에게 주사약을 투약하여 반수면 상태에서 범죄혐의를 찾아내는 수사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Vincent에게 이러한 약물을 투여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임박한 테러공격계획을 밝혀내었다.

10. 며칠 후, Plato국의 수사기관은 Vincent를 조사하여 테러조직의 테러행위를 저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Daram족의 무장단체는 경찰청을 폭탄으로 공격할 예정이었으며, 공격이 성공하였다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11. Vincent는 방송을 통하여 독립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로 반역죄로 기소되어 1심, 2심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Depaul국은 자국 국민인 Vincent가 구속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Plato국의 형사소송법상 영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었으며, Vincent의 상고는 허가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Vincent에 대하여는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12. 한편, Depual국은 Vincent가 영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Plato국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Vincent가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양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은 2016. 6. 경 “Vincent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 합의 1개월 이내에 양국 사이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국 사이의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하여 해결한다. 다만, 선결적 항변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절차적, 실체법적인 주장을 할 양국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서면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 이후에도 양국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13. 위 형사판결이 내려진 후 Vincent는 Depaul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Plato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Depaul국의 법원은 Vincent가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영사의 조력을 받지도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협박을 받았고, 동의 없이 조사과정에서 약물이 투여되었다는 이유로 Plato국 정부에게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자 Depaul국의 법원에는 Plato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구금, 고문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는 양국 사이의 외교문제로 비화하였다.

14. 2016.8. 양국의 외교부 장관은 하계올림픽 개회식에 참가하였다가 우연히 만찬장에서 옆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대화 중에 Plato국의 외교부 장관은 “Depaul국의 법원이 Plato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지만 가능한 평화적으로 해

결하고 싶다. 이 문제는 ICJ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Depaul국의 외교부 장관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고 언급하였다.

15. 며칠 후 Plato국은 위 대화 내용을 요약한 서면을 작성한 후 외교부 장관이 서명을 한 후 이를 Depaul국에게 송부하였으나 Depaul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 양국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어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16. 그 이후 Plato국은 Depaul국을 상대로 ICJ에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할권의 근거

-2016. 8. 양국 외교부 장관 사이의 합의

청구취지

-Depaul국의 법원이 Vincent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Plato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17. Plato국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Depaul국도 Plato국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할권의 근거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및 2016. 6. 양국 사이의 합의

청구취지

- Plato국이 Depaul국의 국민인 Vincent를 고문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 Plato국은 고문 등으로 Vincent가 입은 손해를 Depaul국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Plato국이 Depaul국 국민인 Vincent가 체포되어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Depaul국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18. Plato국과 Depaul국은 모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에 가입하였다. 다만, Depaul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는 임의의정서의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유보를 첨부하였다.

19. Plato국과 Depaul국은 각 사건에 대하여 소장(Memorial) 및 답변서(Counter Memorial)을 제출하였다.

20. 양국은 모두 상대방의 제소에 대하여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즉, Plato국의 제소에 대하여 Depaul국은 2016. 8. 합의는 관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Depaul국의 제소에 대하여 Plato국은 Depual국이 위와 같이 첨부한 유보를 원용하면서 ICJ의 관할권을 다투었다. 영사교통권침해에 대하여는 Vincent가 국적 행사를 포기하였으며, Vincent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Depaul국의 제소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21. Plato국과 Depaul국은 ICJ에 대하여 위 양 사건을 같이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ICJ는 이를 수용하였다. 나아가 Plato국과 Depaul국은 두 사건에 대하여 모든 변론을 마친 후에 선결적 항변 및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함께 내려주도록 ICJ에 요청하였으며, ICJ는 이를 받아들였다.

22. Plato국과 Depaul국은 모두 UN의 회원국이며, ICJ규정의 당사국이다. 나아가 양국은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임의의정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이다.

//끝//